



Newsletter

Korea Tax Updates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기존 판례 변경)

사건개요

내국법인 A사는 2011년 미국 특허관리회사와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년 화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40여 건에 대해 16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사용료를 지급할 때 한미조세조약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A사는 이후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한 사용료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관련 기술이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음.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한·미 조세조약상의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을 근거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원천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과세관청은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함.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및 의의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특허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특허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국내에서의 특허기술에 대한 실질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음(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 두 59908 판결).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사용'의 개념 역시 국내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미등록 특허 사용료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즉,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우선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동 조세조약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구)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사용'은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임.

판례의 변경

이번 판결로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 6 조 제 3 항, 제 14 조 제 4 항의 특허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아래의 판결은 이번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됨. 이로서 33 년간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결이 모두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 누 6887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 두 864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 두 1835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 두 9670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 두 42883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 두 36592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 두 50946 판결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 두 47100 판결

Keynote:

외국법인에 외국 법인에게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료는 관련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원천세의 부과 대상이 됨.

계약상 사용료 지급의 범위, 적용 지역,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은 국내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특히, 하나의 계약이 여러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경우, 한국에 귀속되는 사용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Newly Issued Tax Interpretations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법원 판결

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 B사는 모회사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관련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임대하고 유지보수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B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급금이 범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함. 이에 과세관청은 쟁점 소프트웨어에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취지로 B사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본 사안에서 법원은 쟁점 지급금을 단순한 상품 구입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구합76700), 주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음:

- B사가 미국 모회사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나 기술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 B사는 소프트웨어의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구체적·개별적인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고객별로 최적화(Customize)하는 방식으로 개작한 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사용량이 아닌 단위당 고정가격에 따라 산정된 점

Keynote: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대가가 반드시 사용료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 중 하나임. 과세관청은 고가 또는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 실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전수여부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원은 소스코드 제공 여부, 맞춤형 여부, 대가 산정방식을 핵심 기준으로 기술정보나 노하우가 이전되었는지를 판단해 왔음(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실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체결 시 단순 유통구조와 기술·노하우 이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유사한 과세분쟁에서 참조사례 중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납세자의 시장침투전략에 대한 차이조정을 임의적 조정으로 보아 부인하는 동시에 과세관청이 비교대상회사를 '5년 연속 선정' 기준으로 추려낸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심판례

청구법인 C는 완성차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완성차 일부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중지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 모회사로부터 수취한 손실보전금, 비용보전금, 용역대가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모회

사 매입채무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

C는 해당 사업연도들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거래순이익률법(TNMM)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지 판매법인의 철수 보다는 청구법인과 딜러사들이 기존의 인력, 판매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고 빠르게 판매량을 회복하는 소위 '시장침투전략'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과거 3개년 평균 판매관리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비교대상업체의 과거 3개년 평균 판매관리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영업손실을 초래한 사건 발생 전 3개년 평균 판매관리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각 영업이익에 가산하는 차이조정을 수행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손실보전금을 가산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함.

이에 대해 처분청은 손실보전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한 조정내역은 인정하는 한편, ① 상기 시장침투전략에 의한 판매관리비 차이조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차이조정을 부인하였으며, ② 비교대상회사도 5개년 연속 선정된 일부 회사만으로 재선정하고 ③ 모회사에 지급한매입채무 지연이자를 영업관련 비용으로 반영해 소득조정 부과처분을 함.

심판원은 ① 시장침투전략은 모회사가 국내에서의 판매망 유지를 위한 사업전략으로서, 청구법인이 시장침투전략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부족하고 그룹 TP정책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이조정을 부인한 반면, ②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를 '5년 연속 선정' 기준만으로 추려낸 방식은 연도별 분석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③ 매입채무 지연이자란 상거래 매입대금의 일부이므로 차입금 이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차감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편, 청구법인 C가 수행한 차이조정은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조심2023서9158, 2025.04.09).

Keynote: 본 심판례는 OECD TP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장침투전략을 근거로 한 차이조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략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및 비용 부담 근거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며, 아울러 비교대상기업 선정 시 매 사업연도별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의적 선정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또한 매입채무 지연지급액의 경우 그 성격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기 보다 영업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이전가격 보상조정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거래규모)을 고려하거나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례

내국법인 D는 국내에서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국내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제3자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함.

과세관청은 D와 그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해 D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원가가산방법을 선택하고 D와 제3자들과의 거래에서의 원가가산율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때 거래대상 제3자들의 매출액 규모 간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었음.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이 매출규모의 차이가 큰 다른 업체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면서도 원가가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83335), 2심 법원도 동일한 결론이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4누52610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음(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 33231 판결).

Keynote: 이번 판결은 매출액 규모 등 정상가격 비교가능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이는 향후 이전가격 분석 실무에서 비교대상 선정 시의 차이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의무 미이행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관련 규정 시행

지난 Korean Tax Brief 2025년 7월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 소속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4명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됨. 그리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청 자료의 제출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미제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Upcoming Tax Reporting Reminder

-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및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2025년 10월 15일까지 제출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0월 27일까지 신고 납부

International Tax Team – Key Contacts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Kang, Sung Won	skang22@kr.kpmg.com	02-2112-6771
Ryu, Su 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ark, Seong Kyun	seongkyunpark@kr.kpmg.com	02-2112-0455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